

7th Polar Law Symposium

『The Polar Regions in the
Asian Century』

Hobart, Tasmania, Australia

29-31 October 2014



극지연구소

참가보고

이 용 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호주 호바트에서 2014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타스마니아대학 해양 및 남극연구소(Institute of Marine and Antarctic Studies:IMAS) 주최로 제 7차 극지법 심포지움이 개최됨.
- 동 심포지움은 아이슬란드 아큐레이대학교 극지법연구센터가 발기하여 시작된 회의로서 극지법 전문가들이 북극 및 남극의 현안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됨.
- 금년이 제7차 심포지움으로서, 기존에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에서 개최되었으나 금번 심포지움은 최초로 남반구에서 개최됨.
- 개최장소의 특이점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금번 회의의 핵심쟁점은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남극조약체제를 북극질서형성에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음.
- 또한 북극과 남극의 보전 및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참여 동기와 활동을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
- 주최국 호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린란드, 캐나다, 이란,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들이 참여함.
- 전문가의 구성은 국제법학자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학, 인문학 등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교수 또는 박사들 이외에도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도 다수 참여하였음.
- 심포지움은 3일간 총 10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 남극과 관련하여서는 29개국의 협의당사국을 포함한 50개국의 조약당사국이 남극에 관한 국제질서를 대표할 수 있는 지, 남극조약 비당사국의 남극 대륙 영토주권 가능성, 비국가행위자들의 활동 증가로 인한 남극활동의 통제 곤란성과 환경 위해성, 과학조사를 제외한 남극 광물자원 활동 금지 조치의 한계와 모라토리움 기간 종류 후의 처리 문제 들이 폭 넓게 토의됨.

- 특히, 아시아국가들의 남극 진출현황과 이들의 불법어업 등의 문제점이 비교적 강하게 지적되었으며, 일본과 호주간 진행되었던 남극포경어업에 관한 ICJ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도 진행되었음.
-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절차로 남극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비국가행위자의 통제 필요성 및 그 방안 등이 남극법제도의 현안사항으로 지적되는 분위기였음.
- 북극과 관련하여서는, 북극조약의 체결 가능성, 북극공해의 처리 문제, 북극경제이사회의 기능과 향후 역할, 북극 연안국 원주민의 권리와 현황 및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자치상태의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현황과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에 노출된 위협요소, 북극 어업자원 보호제도, IMO의 Polar Code 제정 현황 및 문제점 등이 폭넓게 논의됨.
- 쟁점이 되었던 북극조약의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Arctic 5와 비연안 북극권 국가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캐나다의 발표에서 유추하면 Arctic 5는 북극 연안국 관할해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북극 공해를 일명 도넛홀이라고 명명하며 동 해역을 Arctic 5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지역해개념으로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핀란드 전문가의 발표에 유추하면 비연안 북극권국가들은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분야에 대한 분야별 북극조약을 북극권국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국국의 참여 속에 형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즉, 캐나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Arctic 5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입장이 같지 않으며, Arctic 5 간에도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하여 러시아와 나머지 국가간의 외교적 대립이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들 국가간에는 2010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북극 공해어업질서 형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이 확인되어 외교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북극 공해의 관리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아시아국가들과 극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부정적 내지는 비판적 태도로 비아시아권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짐.
- 일본과 중국 전문가가 자국이 극지에서 활동하는 목적과 역사 및 현황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극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보와 비환경친화적 개발, 중국 노동자들의 그린란드 이주로 인한 원주민 생활 환경의 파괴 가능성 등이 지적되었음.
-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희귀금속광물(Rare Earth Elements)의 세계시장을 97%이상 지배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판적 시각 내지는 방어적 시각이 가감없이 노출되었음.
- 일본의 경우에도 과학조사를 빙자한 상업적 포경어업 실시에 대한 ICJ 판결이 주는 함의, 호주의 남극조약지역에 대한 200해리 외측의 대륙붕한계 신청에 대한 일본의 반대 등이 비판적 시각으로 제기됨.
- 또한 말레이시아의 남극질서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의한 남극 불법어업, 남극관광 중국인 급속한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극 및 북극의 아시아국 활동을 거론할 때 여러차례 거명되었지만 명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음.
- 전반적으로 비아시아권국가들은 아시아국가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북극의 대한 관심이 오로지 경제적 이익 창출에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남극은 여전히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활동에 기반을 둔 논의가 중심이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생물탐사, 불법어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간의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 됨.

- 북극의 경우 지구 기후변화가 북극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적 논의의 중심은 어업, 항행, 광업, 관광 등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북극지역에서 증대될 것을 예상되는 활동을 여하히 규율할 것이며 누구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왜 극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북극 어업질서의 형성, IMO Polar Code 채택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극 연안국의 지역 해체제 구성 노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북극연안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